

의안번호	2213371
의 퇴 인	김남근의원
회 답 일	2025. 10. 29.
추계번호	25C551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원, 2029년 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원(연평균 8,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보수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24조의3)	200	-	-	200	-	400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3(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국가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3항)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24조의4(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각각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제1항 본문) 다만, 시·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제1항 단서) 여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시·도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함(제4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4조의3(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2	안 제24조의4(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위원회)	×	-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위원 구성을 가정하여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국가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3제3항),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초의 조사는 법이 시행되는 첫 해인 2026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3년마다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¹⁾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2023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자격증 취득(1·2·3급) 누계 기준으로 청소년 지도사는 72,622명, 청소년 상담사는 41,084명임

[표 3]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보수 수준 등의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보수 수준 등의 실태조사 (안 제24조의3)	200	-	-	200	-	4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